

## 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	1992. 1.17.	의회훈령 제 3호
일부개정	1999. 1.16.	의회훈령 제15호
일부개정	2005. 6.10.	의회훈령 제27호
일부개정	2009. 6.26.	의회훈령 제53호
전문개정	2010. 9. 3.	의회훈령 제5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)에 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 관련사항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,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
2. 학술연구기관 또는 언론계출신 유경험자
3.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편집과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③ 의원인 위원에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간사와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의회사무처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9조(수당과 여비)**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부칙** (1992.1.17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1999.1.16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05.6.10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09.6.26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10.9.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